의안번호	제544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태훈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11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이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4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11일

발 의 자 : 이태훈, 김종필, 노금식, 최정훈, 김성대, 오영탁, 이옥규, 임영은

1. 제정 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관련부서 협의: 충청북도 행정국 도민소통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조례안예고 : 2024. 4. . ~ 4. .(5일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인 시·군·구 지회 및 읍·면·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 및 활동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정신의 계승·발전 및 건강사회 실현을 통해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사업비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조례안 제4조(지원)

○ 조례안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4. 비용추계 결과

○ 재정수반요인 :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

○ 추 계 기 간 : 2024년부터 2028년부터 5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1,077,265천원(**도비 450,690천원**, 자부담 626,575천원)

-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 등 3개 사업

○ 재원조달방안 : 도비 41.8%, 자부담 58.2%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국 도민소통과장 이택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90,138	90,138	90,138	90,138	90,138	450,690
(기존) 3개 사업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 운영지원		37,638	37,638	37,638	37,638	37,638	188,190
- 자유민주 시민의식 함양 및 자원봉사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 자유수호 기반조성 전진(결의)대회		30,500	30,500	30,500	30,500	30,500	152,500
재원 조달		215,453	215,453	215,453	215,453	215,453	1,077,265
도비	**소 계**	90,138	90,138	90,138	90,138	90,138	450,690
	보조금	90,138	90,138	90,138	90,138	90,138	450,690
시군비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기 타 (자부담)		125,315	125,315	125,315	125,315	125,315	626,575